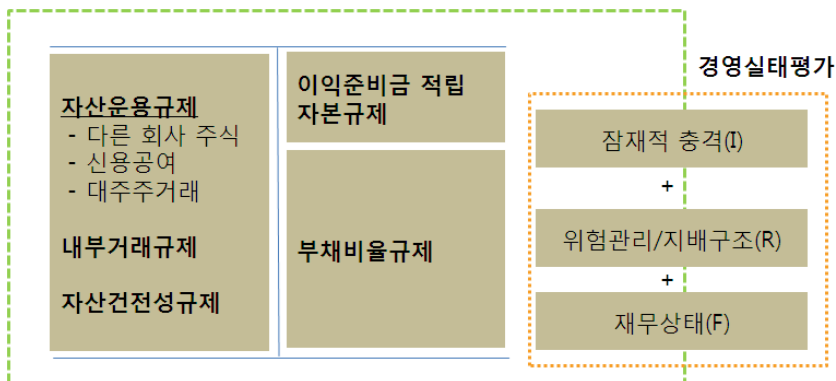


IV.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1. 재무건전성 규제 및 감독 현황

- 보험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자회사들 간의 리스크전이,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상시감독(FRI)이 이루어지는 체계임.
-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간의 신용 공여 및 출자 제한 등의 차단벽 설치를 통한 리스크 전이를 방지함.

〈그림 IV-1〉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규제 및 감독 현황



-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자회사 출자 하한, 신용공여 및 주식취득 등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경제력 및 리스크 집중을 방지함.
- 지분 제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는 5% 이내
- 부채 비율: 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이익준비금: 매기 순이익의 10% 이상을 자본금 한도로 적립

-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자산운용규제와 자본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운용에서는 자회사와 더불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임.
- 해외 사례는 자산운용규제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위험자본금을 부과하는 리스크중심의 규제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
- 국내 건전성 감독도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자본규제를 통한 간접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그림 IV-2〉 보험지주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틀



- 금융지주회사법(2009)은 보험지주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등과의 불공정거래와 부실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규제함(김홍기 2010).
- 대주주 등과 보험지주회사 간 거래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와 절차적 규제를 제시함.
 - － 한편,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현장검사 근거를 마련함.⁵⁴⁾
- 다만,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에서 담보확보의무를 배제함.

54) 금융지주회사법 제37조(비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의 특례).

- 독일의 그룹 전체 신용공여의 10% 이상이 동일 투자대상에 집중될 경우 분기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 규제에 대해서는 동일인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가 보험자회사는 물론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됨.

- 지주회사의 동일 개인 및 법인: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⁵⁵⁾
- 지주회사의 동일 차주: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⁵⁶⁾
-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 출자자 신용공여한도
 - 주요 출자자: 금융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⁵⁷⁾
 - 대주주: 일정금액⁵⁸⁾ 초과 시 이사회 사전승인, 금융위 보고 및 공시
 - 대주주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금융위 보고 및 공시
- 보험지주회사 내 보험회사와 지주회사 대주주와의 거래
 - 30일 전 금융위 사전 보고
 - 총자산 0.5% 이상 규모의 신용공여, 증권거래, 부동산, 용역거래 등
-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리스크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거래규제를 은행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함.⁵⁹⁾
 - 자회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능
 -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및 담보확보의무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함.

55) 업종구분비율(종금/금투 20%, 보험 60%)을 자회사 등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56) 업종구분비율(종금/금투 25%, 보험 240%)을 자회사 등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57) 업종구분비율(종금15%/금투 0%, 보험 40%, ...)을 자회사 등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58) Min(자기자본순합계액의 0.1%, 10억 원).

59)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간 출자를 금지하고,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기준으로 개별 10%, 지주회사 전체 20%를 한도에서만 허용하고 대신 담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의 진단 및 평가

가. 개별기업 단위의 자기자본규제의 한계

- 보험업과 은행업, 금융투자업의 국제감독자기구가 모인 공동포럼(Joint Forum)은 여러 금융업으로 이루어진 금융그룹의 지급능력평가에 대하여 연결기준 합산방식, 리스크기준 합산 또는 차감(공제)방식을 제시한 바 있음.
 - 연결방식은 법적으로 다른 실체를 상호의존적인 개별 실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체로 간주하여 내부거래를 제거함.
 - 합산방식은 개별 실체를 인정하나 내부거래를 조정하여 자본을 합산하고, 개별 기업 간 평가기준이나 자본요건이 다르므로 상호 조정이 필요함.

〈그림 IV-3〉 공동포럼이 제시한 지급능력평가



자료: Joint Forum(1999).

-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공동포럼에서 제시한 틀을 준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별기업 단위의 접근방식에 머물러 있음.
 -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시 그룹 내 각 금융업권별 자본규제에 따라 산출된 요구자본을 단순 합산하고 있음.
 - 또한, 보험그룹 내 비금융자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은 자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위험도 평가라기보다는 비금융자

회사 소유를 억제하는 페널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은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적용하고 있어 외형상 단일 기준에 따라 요구자본이 산출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국내 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은행과 비은행이라는 지주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고 있을 뿐 경제적 실체를 구분하지 않아 그룹이 노출된 리스크양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개별 자본규제의 단순 합으로만 계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단위의 개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반면, 그룹 전체를 하나로 보아 요구자본을 계산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상이한 경제적 실체들이 은행업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기업 단위의 또 다른 예에 불과함.
 - － 그룹 내 은행업이 아닌 자회사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요구자본 산출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 단, 향후 그룹 내 타 금융권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를 반영할 수 있는 자본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결과적으로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 자본규제는 개별기업 단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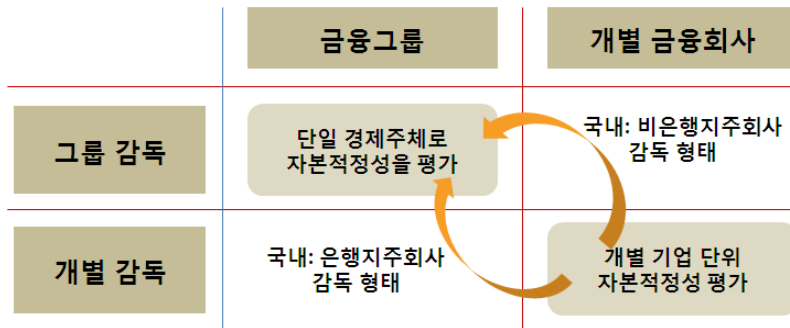
■ 또한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이 개별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감독조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감독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임.

- 다른 금융권역 감독자들 간 감독 협력 및 정보교환이 용이하도록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체계를 정비함.

나. 경제적 실체에 기초한 요구자본 산출 필요

- 향후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그룹 내 경제적 단위에 따라 평가되고, 그룹 내 비금융회사가 그룹에 미칠 리스크도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자본규제가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와 보험회사 등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그룹 내 다른 금융업이나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EU Solvency II의 모델을 검토해야 함.

〈그림 IV-4〉 국내 금융지주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방향



자료: IAIS ICP23(Group Supervision)의 감독 형태를 수정 인용함.

- 이는 서로 다른 금융업에 대한 동일한 리스크평가와 동일한 자본부과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송옥렬 2010).
- 여러 금융업을 “상품과 기능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사업모형의 발생이라고 본다면 동일 리스크에 동일 자본을 요구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나 동일 기준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오히려 동일 자산이라도 어느 포트폴리오에 있느냐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임.

다. ORSA를 통한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정착 유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량모형에 치우친 감독에 대한 반성으로 리스크관리의 절차와 질의 모니터링수단으로 등장한 ORSA가 주목받고 있음.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주도하는 틀에서 전사적 리스크관리(ERM)를 통해 지주회사 스스로 그룹 운영에 필요한 적정 자본을 관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방식(ORSA)으로 감독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 IAIS는 국제감독기준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와 보험그룹에 정기적인 ORSA 시행과 그룹 내 계열사에 의한 리스크까지 ORS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함.⁶⁰⁾
 - － 또한 ORSA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⁶¹⁾
 - － EU Solvency II의 ORSA 지침 역시 ORSA가 리스크관리의 일부이므로 일상 책임은 리스크관리기능에 있으나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음을 명시함.⁶²⁾
 - 한편 EU Solvency II의 ORSA 지침은 그룹 ORSA와 그룹단위 ORSA를 구분함.
 - － 그룹 ORSA는 그룹 내 모든 자회사를 포함하여 그룹의 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반영함.
 - － 그룹단위 ORSA는 그룹 차원은 물론이고 그룹 내 자회사 차원에서도 ORSA의 시행을 고려함.
 - － 둘 중 어느 ORSA를 적용할 지는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 따라서 그룹 리스크특성에 영향을 주는 그룹 내 모든 회사는 소유 기준과 관계없이 그룹 ORSA에 포함되고, 별도로 규제되는 자회사 등은 개별 ORSA를 시행하는데 사전 협의에 따라 그룹은 그룹단위 ORSA를 시행함.

60) ICP 16(ERM), 문단 16.11, 문단 16.13.

61) ICP 16(ERM), 문단 16.12.

62) EIOPA(2011), EIOPA Consultation on the ORSA.

■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 역시 보험지주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가 내부화 되도록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ORSA의 도입이 필요함.

○ ORSA는 한 번의 검사나 하나의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체계의 핵심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은 그룹단위 평가에 필요한 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본 및 리스크관리 평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IV-1〉 국내 보험그룹 재무건전성 감독의 진단 및 평가

	기준	목표	비고	평가
그룹 감독 체계	그룹단위	경제적 실체로서의 그룹	개별 + 그룹 동시 감독	△
	그룹감독 조직	그룹감독자 지정, 감독협의체 구성	정보공유 + 협력	×
	비금융 자회사	보험회사에 리스크 노출이 있으면 감독에 편입	정보접근, 검사	△
자본 평가	가용자본	연결기준 가용자본 산출	연결기준	△
		비지배지분 가용성 평가 등 자본의 질을 반영	가용성 + 대체성	×
	요구자본	분산효과 반영한 그룹 전체 리스크양 산출	분산효과	×
전사적 리스크 관리 평가	전사적 위험관리 (ERM)	그룹 자체의 리스크 평가와 적정 자본 관리	미래지향적 위험관리	△
	감독목적 ERM 시행 및 보고	ORSA 기준 마련	—	×
	감독체계	보고내용의 효과적 평가와 감독	—	×

주: △은 현재 시행 중이나 그룹감독 기준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